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창 업 경 제 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구 미 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도·지자체, 도내 중견·성공기업, 지역대학이 공동 출자하여 경북 대표 벤처 펀드 조성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7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대 표	유주현	박상태
설립일	2014. 12. 17.	2020. 6. 5.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로 66

(2) 출자예정액 : 10억원

- 25년 2억원(20%), 26년 3억원(30%), 27년 3억원(30%), 28년 2억원(20%)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1) 조 합 명 :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2) 운 용 사 :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3) 출 자 자 :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경북도, 기초지자체, 지역 중견기업·선배기업, 지역대학

(4) 결 성 액 : 100억원(시비 10억원)

(단위:억원)

구 분	출자기관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00	20	30	30	20
GP(운용사)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3	0.6	0.9	0.9	0.6
	파트너스라운지(유)	5	1	1.5	1.5	1
LP(출자자)	경상북도	10	2	3	3	2
	포항시	10	2	3	3	2
	구미시	10	2	3	3	2
	경산시	10	2	3	3	2
	경주시	10	2	3	3	2
	안동시	10	2	3	3	2
	칠곡군	10	2	3	3	2
	지역 중견기업·선배기업	21	4.2	6.3	6.3	4.2
	지역대학	1	0.2	0.3	0.3	0.2

(5) 존속기간 : 8년(투자4년, 회수4년)

(6) 투자대상 : 초격차·경북 중점 산업 분야 딥테크 초기창업기업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회 출자금 납입 (25년)
- 2회 출자금 납입 (26년) 및 3회 출자금 납입 (27년)

(8) 기대효과

- 경북 도내 초격차·중점 산업 분야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3)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3억원) * 출자예정액 10억원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자 제안서 상 경북도, 지자체, 지역기업·지역대학 출자금액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세출	200	300	300	200	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시 비	200	300	300	200	1,000
합 계	200	300	300	200	1,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창업경제과 창업투자팀 임형석(☎480-6052)

소 관 부 서		창업경제과
입	과 장	권 미 영
안	팀 장	전 기 훈
자	담 당 자	임 형 석 (480-6052)